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68 |
|----------|-----|

제출년월일 : 2020. 0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중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례 신설(안 제2조 제1호~제10호)

- 농업, 농업인, 농촌, 경영체 및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한 정의 규정

나.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에 대한 조례신설(안 제4조 제1항, 제2항)

- 중간지원 조직의 설치목적과 운영에 대한 규정

다. 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경쟁력 강화(안 제6조 제8호~제11호)

-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각 호의 규정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0.4.3. ~2020.4.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반영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민간을 중간에서 연결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한 영역의 주민·경영체 등의 육성 및 자립을 돕는 전문적인 지원조직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7.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9.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업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추진단” 또는 “지원센터” 등의 법인이나 단체로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 관련 영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호)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업·식품산업 인력육성 및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사업
8.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모·부성권 보호 및 가사 지원 사업과 취약한 농가복지증진지원 사업
9. 사회취약계층(고령·장애·여성)의 농작업 편의도모를 위한 농작업 위탁, 소형농기계 구입, 소모성농자재 지원, 인력절감장비 지원
10. 평창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11.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산림기본법」 제3조를 준용한다.</p> | <p>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 |

현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
과 민간을 중간에서 연결하
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 관련 영역의 주민·경영
체 등의 육성 및 자립을 돕
는 전문적인 지원조직을 말
한다.

6.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
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
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
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
는 지역

7.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
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
산되는 산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

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
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9.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
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신 설>

제4조(지원범위) (생 략)

제5조(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생 략)

1. ~ 6. (생 략)

7. 농업·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영·유아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업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추진단” 또는 “지원센터” 등의 법인이나 단체로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 관련 영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현행과 같음)

제6조(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및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사업

보육사업(농업인 자녀에 한
합)

<신 설>

8. ~ 21. (생 략)

제6조(예산의 확보) (생 략)

제7조(사후관리) (생 략)

제8조(시행규칙) (생 략)

8.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모·부성권 보호 및 가사 지원 사업과 취약한 농가 복지증진지원 사업

9. 사회취약계층(고령·장애·여성)의 농작업 편의도모를 위한 농작업 위탁, 소형농기계 구입, 소모성농자재 구입, 인력절감장비 지원

10. 평창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11.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12. ~ 25.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의 확보) (현행과 같음)

제8조(사후관리)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붙임]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절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10. 8.>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지침, 협약서

- 시장·군수는 지역의 법인, 단체 등 활동조직이 참여하는 신활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이 주도하여 예비계획서 작성
- 평창군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 마련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 |
|-----|------------------|
| 작성자 | 평창군 농업축산과장 전 윤 철 |
| 연락처 | (033) 330 - 1302 |